

충청북도 단양군 폐포공해 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(안)

충청북도 단양군 폐포공해 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(안)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 제3항 중 "1993년 12월 31일"을 "199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근거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.
- ③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.

신.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1993년 12월 31일</u> 까지 시행한다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(시행기간) <u>1994년 12월 31일</u></p>